

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(변경)결정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1. 10 동두천시장이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. 11. 12

다. 상정일자 : 제13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제8차 본회의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중 경기도지사 결정사항인 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함.

○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중 동두천시장 결정사항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동두천시 지행동 262-2번지 일원의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(특목고)에 대하여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함.

○ 경기도고시제2003-5096호(2003. 9. 30)로 결정고시된 동두천 도시(재정비)계획에 따라 금번에 도시지역으로 확장된 소요동, 상패동 일원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결정(변경)을 입안함.

- 소요동 일원의 지역간선도로 확보를 위한 중로 7개노선의 신설(변경)과 기입지한 소요초등학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

- 상패동 일원의 지역간선도로 확보를 위한 중로 2개노선의 신설(변경) 입안

○ 경기도고시제2003-5096(2003. 9. 30)로 결정고시된 동두천 도시(재정비) 계획에 따라 조건부결정사항인 중앙공원내 학교부지로 사용중인 시설을 현실화하고자 공원시설에서 일부 제척하여 동두천중고등학교의 시설로 편입하고자 변경 입안함.

[36,580㎡ → 39,480㎡(증 2,900㎡)]

○ 중로3-21호선에서 어수로 통과하여 신사로로 이어지는 생연파출소 전면통과 도로의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를 위하여 기존도로의 폭원을 확장하여(변경) 입안하며, 생연주차장에 대하여 당초 결정면적이 기조성된 주차장과 차이가 있어 일부 축소 하여 입안함.

○ 동두천시의 안정적인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“상수도시설 확장공사” 내용에 맞추 어 배수지의 변경 입안(동두천배수지, 광암배수지, 상패배수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후 결정토록 함에 따라 동두천시 지행동 262-2번지 일원의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부지 용도지역 변경 과 일부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결정 변경 등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여건, 주민편의, 도시발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6. 심 사 결 과

“ 원안가결 ”